

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2제1항 중 “3천제곱미터”를 “5천제곱미터”로 한다.

제22조제1항제1호 중 “소규모 생산시설”을 “소규모 생산시설(3천제곱미터 이하)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7조의2(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생산시설 설치)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생산시설”이란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생산시설을 말한다.	제17조의2(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생산시설 설치) ① ----- ----- ----- -----5천제곱미터----- -
② ~ ⑤ (생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22조(권한 등의 위임과 위탁) ① (생략)	제22조(권한 등의 위임과 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
1.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소규모 생산시설의 설치 승인 및 변경 승인	1. ----- ----- (3천제곱미터 이하)----- -----
2 ~ 3 (생략)	2 ~ 3 (현행과 같음)
② ~ ③ (생략)	② ~ ③ (현행과 같음)